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968
----------	-------

발의연월일 : 2026. 5. 14.

발 의 자 : 윤준병 · 박용갑 · 박희승  
전용기 · 이성윤 · 안호영  
이정문 · 양부남 · 문금주  
이춘석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의 감면,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과세특례, 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관세의 경감,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들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 교통·환경친화적 산업의 활성화와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도모하며, 국토, 교통, 지역발전 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규정들이나, 해당 감면조항은 일몰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에 한하여 시행되고 있어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감면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국토,

교통, 지역발전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이전공공기관이 혁신도시나 세종시로 이전하기 위해 기존 부동산을 2031년까지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의 익금산입 유예 혜택을 5년 연장함(안 제62조).
- 나.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기존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71조의2).
- 다. 공익사업을 위해 2년 이상 보유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77조).
- 라. 공익사업 용지를 양도하고 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받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또는 과세이연 혜택 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77조의2).
- 마. 공익사업 시행으로 공장이나 물류시설을 이전하기 위해 토지·건물을 2031년까지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의 익금불산입 또는 분할납부 혜택을 5년 연장함(안 제85조의7, 제85조의9).
- 바. 수도권 밖의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2031년까지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 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98조의9).
- 사. 수도권 밖에서 이스포츠대회를 개최하는 내국법인에 대한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104조의35).

- 아. 택시 기사 처우 개선 등을 위해 일반택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106조의7).
- 자.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109조).
- 차. 1,000cc 미만 경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과 택시용 부탄에 대한 세액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111조의2, 제111조의3).
- 카. 중소·중견기업이 수입하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자재에 대한 관세 감면조항의 일몰조항을 5년 연장함(안 제118조).
- 타.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및 기회발전특구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121조의34, 제121조의35 등).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1항 전단 중 “2026년”을 “2031년”으로 한다.

제7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을 “2031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26년”을 “2031년”으로 한다.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을 “2031년”으로 한다.

제77조의2제1항 중 “2026년”을 “2031년”으로 한다.

제8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을 “2031년”으로 한다.

제85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을 “2031년”으로 한다.

제98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을 “2031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26년”을 “2031년”으로 한다.

제104조의35제1항 중 “2026년”을 “2031년”으로 한다.

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6년”을 “2031년”으로 한다.

제106조의7제1항 중 “2026년”을 “2031년”으로 한다.

제109조제3항 중 “2026년”을 “2031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2026년”을 “2031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2026년”을 “2031년”으로 한다.

제111조의2제1항 중 “2026년”을 “2031년”으로 한다.

제111조의3제1항 중 “2026년”을 “2031년”으로 한다.

제118조제1항제3호 중 “2026년”을 “2031년”으로 한다.

제121조의3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을 “2031년”으로 한다.

제121조의3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을 “2031년”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의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지  
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주  
택 소재지, 주택 가액 등을 고  
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인구감  
소지역주택”이라 한다) 1채를  
취득한 후 인구감소지역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한 주택, 조  
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양  
도하는 경우에는 그 인구감소  
지역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  
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또  
는 제4호를 적용한다.

1. 2. (생략)

② 1주택을 보유한 1세대(「중  
합부동산세법」 제2조제8호의  
세대를 말한다)가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의 기간 중에 인구감소지역주  
택 1채를 취득한 경우에는 같  
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③·④ (생략)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

-----2031년-----

1. 2. (현행과 같음)

② -----

-----2031년-----

③·④ (현행과 같음)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한다.

② ~ ⑧ (생략)

제109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①·② (생략)

③ 제1항은 2009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한다.

④·⑤ (생략)

⑥ 제4항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한다.

⑦·⑧ (생략)

⑨ 제7항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 적용한다.

제111조의2(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로서 배기

-----.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109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2031년-----  
-----.

④·⑤ (현행과 같음)

⑥ -----  
---2031년-----  
-----.

⑦·⑧ (현행과 같음)

⑨ -----  
---2031년-----  
-----.

제111조의2(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  
-----  
-----  
-----  
-----.



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바  
목에 따른 석유가스 중 부탄  
(이하 이 조에서 “부탄”이라 한  
다)에 대해서는 킬로그램당 개  
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액 중  
킬로그램당 40원을 감면한다.

② ~ ⑩ (생략)

제118조(관세의 경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  
품 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에  
대해서는 관세를 경감할 수 있  
다.

1. 2. (생략)

3. 2026년 12월 31일까지 중소  
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수입하  
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생  
산용기자재, 이용기자재 또는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  
기 위한 기자재(그 기자재 제  
조용 기계 및 기구를 포함한  
다)

4. ~ 23. (생략)

② ~ ④ (생략)

-----  
-----  
-----  
-----  
-----  
-----

② ~ ⑩ (현행과 같음)

118조(관세의 경감) ① -----  
-----  
-----  
-----  
-----  
-----

1. 2. (현행과 같음)

3. 2031년-----  
-----  
-----  
-----  
-----  
-----  
-----  
-----  
-----  
-----  
-----

4. ~ 23.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